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8

발의연월일: 2020. 6. 24.

발 의 자:윤재갑·조경태·위성곤

문진석 • 이동주 • 장경태

주철현 · 김민철 · 이원택

이재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, 이는 2020년 12월 3 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도시로의 인구유출,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·임업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용) ①
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	
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	
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	
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	
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	
고, 제5호 및 제6호는 <u>2020년 1</u>	<u>2024년 1</u>
<u>2월 31일</u> 까지 공급한 것에 대	<u> 2월 31일</u>
해서만 적용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